

국제교류원 운영 규정

2006. 11. 01. 최초제정	2020. 09. 01. 부분개정
2009. 03. 01. 부분개정	2022. 05. 01. 부분개정
2012. 01. 03. 부분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5. 05. 01. 전면개정
2016. 11. 01. 부분개정	2026. 03. 01. 부분개정
2017. 09.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해외 협약기관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국제교류원(이하 “교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교류원은 국제교류 관련 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류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국제교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국제홍보, 학술정보의 자료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교환학생, 어학연수,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등 장단기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학술 및 문화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7. 해외 창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유학생(법무부 유학생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
9. 유학생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유학생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연수과정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어 특별강좌 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국어 특별강좌의 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15. 내·외부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6. 교내/외 영어경시대회에 관한 사항
17. 외국어 공식시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조직구성) ①교류원은 국제교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을 겸보하거나 직원으로 한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류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교류원은 국제교류센터를 둘 수 있으며,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교류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⑤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기준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대학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5인 내외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국제교류 협약체결 및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3. 기타 대학의 국제화 관련 주요 사항

제4장 국제교류 협약

제7조(정의) 이 규정 내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상호 호혜정신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협약체결 대상기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의 교류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으로 한다.

1. 어학연수, 공동학위, 인턴십 및 해외취업 등의 학생교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외국대학 및 기관단체

2. 해외연수, 교환교수 파견 등의 교직원 교류에 협력할 수 있는 외국의 대학 및 기관단체

3.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4.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5. 국제기구 및 단체
6.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제9조(협약체결 절차) ①제8조에 준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추진계획서 및 회의록을 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 또는 사후 보고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협약체결은 해당부서의 장이 원장과 협의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서명방식은 사정에 따라 통신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제10조(체결권자) ①협약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협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다.

②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류원 주관 하에 총장명의로 체결한다.

제11조(보고 및 문서이관) 제10조 제1항과 관련,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교류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약문 등의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교류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정) 교류원의 수강료 및 기타 수입은 교비 예산으로 처리하고, 운영경비는 교류원에 배정된 교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3조(강의료) 교류원의 강의료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총장의 승인 하에 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강좌 수강료) 교류원의 강좌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교류원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6조(내규) 교류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 또는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정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협약 원본은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③(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언어교육원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국제화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